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8.

의안 번호	457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 강남구청장(교육지원과장)

나. 상정의결

-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0. 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개포8단지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 내 개포롱런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평생학습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포롱런아카데미의 명칭, 위치 등 추가(안 별표1)

○ 국가보훈대상 등 수강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별표3)

○ 기타 띄어쓰기 및 나이 표기 정비 등

다.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8.13.~2021.9.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평생교육법」 제21조[1] 및 제21조의3에서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압구정・청담・대치 평생학습관은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음.
- 평생학습센터 별관(개포동 수도공고)은 2009년 9월 개관하여 협약을 통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강의실 2개(181㎡)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수강생은 2천여명으로 파악됨.
- 평생학습센터 본관(개포8단지)은 기부채납시설인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지상 1층 일부(940.29㎡)에 강의실, 소모임실, 라운지 등으로 구성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 행정직 1명으로 운영 준비 중에 있음.

---

1)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일원스포츠문화센터 공간 구성>

구 분	주 요 시 설	면적(㎡)	관리부서
지상1층	다함께키움센터	685.79	여성가족과
	평생학습시설 (개포롱런아카데미 본관)	940.29	**교육지원과** ▸ 강의실 ▸ 소모임실 ▸ 라운지 등
	체육시설	1,024.01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지하1층	공공형 실내놀이터	791.77	보육지원과
	영어도서관	733.65	문화체육과(책읽는도시팀)
	체육시설	1,138.72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공유공간	55.33	
지하2층	체육시설	1,261.32	
	공유공간(주차장)	2,602.73	
	공유공간(기계·전기실)	448.65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 중 평생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은 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내에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근거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포롱런아카데미(본관)로 명칭을 정하는 것보다 일원평생학습센터, 개포평생학습센터로 명명하는 것이 해당 법령이 규율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평생학습센터는 현재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례>[2]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개별조례에서는 설치에 대한 근거 조례를 <사례>[3]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한 것

---

2)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절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3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1.13>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분관)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으로 보여짐.

- 안 별표 3 중 수강료란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게 50퍼센트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사례>4)와 같이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별표로 규정하기 보다는 다른 조례의 <사례>와 같이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3)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4)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강료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1항의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퍼센트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2. 30퍼센트 :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3. 1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③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3강좌 이상 수강 시(3번째 등록강좌부터 감면적용) : 10퍼센트
2.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10퍼센트
3.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5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별표 2에 따른 정예강좌는 수강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후단 신설 2019.5.31>

⑤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할 때,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지역의 행정동이 일원2동으로 유지되었고, 지난 회기 해당 부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명명한 만큼, 해당 시설도 일원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롱런아카데미’라는 단어가 외국어일 뿐만 아니라 용어의 개념도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생학습센터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됨.

○ 개포평생학습센터의 경우 ‘롱런아카데미’라는 명칭을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명칭에 ‘롱런아카데미’를 삭제를 긍정적으로 동의하겠음. 아울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57호

제안일자 : 2021.10.18.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신설 평생학습센터의 소재지가 일원동이므로 지명에 근거하여 관련 시설의 명칭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명칭 수정(안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개포평생학습센터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5	일원평생학습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개포평생학습센터 (통런아카데미)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개 정 안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평생학습센터	개포통런아카데미분관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5		개포통런아카데미별관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수 정 안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개포평생학습센터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5	일원평생학습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7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교육지원과

1. 제안이유

개포8단지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내 개포롱런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평생학습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포롱런아카데미의 명칭, 위치 등 추가(안 별표1)

나. 국가보훈대상 등 수강료 감면 대상 추가(안 별표3)

다. 기타 띄어쓰기 및 나이 표기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평생학습센터	개포롱런아카데미(본관)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5		개포롱런아카데미(별관)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별표 3]

사용료의 감면(제21조 관련)

<table>
<tr><th>구분</th><th>감면비율</th><th>대상</th><th>비고</th></tr>
<tr><td rowspan="7">수강료</td><td rowspan="3">50%</td><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td><td></td></tr>
<tr><td>○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td><td rowspan="3">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td></tr>
<tr><td>30%</td><td>○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td></tr>
<tr><td rowspan="3">10%</td><td>○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td></tr>
<tr><td>○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td><td rowspan="2"></td></tr>
<tr><td>○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td></tr>
<tr><td>5%</td><td>○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td><td></td></tr>
<tr><td>대관료</td><td>100%</td><td>○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td><td></td></tr>
</table>

※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개포평생학습센터 (룽런아카데미)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별표3]

사용료의 감면(제21조 관련)

구분	감면 비율	대상	비고
수강료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3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1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3세까지)	
		○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	
	5%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대관료	100%	○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개 정 안

[별표 1]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압구정평생학습관		강남구 언주로172길 26 (신사동 643-6, 7)
2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동 35-10, 41)
3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동 994-17)
4	평생학습센터	개포룽런아카데미(본관)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동 611-1)
5		개포룽런아카데미(별관)	강남구 개포로 410 (개포동 155)

[별표3]

사용료의 감면(제21조 관련)

구분	감면 비율	대상	비고
수강료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30%	○ 만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1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	
	5%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대관료	100%	○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강료 수입 감소가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교육지원과 행정7급 이다현 (02-3423-5283)